

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이유

- 산림보호원 지원(신규고용, 재고용) 신청서식 및 숲사랑지도원(신규 위촉, 재위촉) 신청서식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여 간소화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산림보호원 지원 신청서식 중 직업(소속) 기재란 삭제(별지 제8호 서식)
 - 산림보호원 지원(신규고용, 재고용) 신청서식에서 직업(소속) 기재란을 삭제하여,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서식 개선
- 나. 숲사랑지도원 신청서식 중 직업(소속) 기재란 삭제(별지 제17호 서식)
 - 숲사랑지도원(신규위촉, 재위촉) 신청서식에서 직업(소속) 기재란을 삭제하여,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서식 개선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완료('20.12.3~'20.12.14)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 : 예정

2) 행정규제 : 해당 없음

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

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8호서식 중 직업(소속)란을 삭제한다.

별지 제17호서식 중 직업(소속)란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